영국 - 2020 Finance Act 제정

■ **영국 의회는 2020년 7월 22일 2020년도 재정법(Finance Act)을 제정함[4], [5]**

○ 법인세율은 인하 없이 기존 19%의 세율을 유지함[6]

- 영국은 2015년 예산안 발표에서 2020년 4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을 18%로, 2016년 예산안 발표에서는 위와 같은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을 17%로 인하할 것이라 발표하였음[7]
- 그러나 영국 정부는 2020년 3월 11일 인하된 17% 세율이 아닌 기존 19%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으며, 2021년 4월 1일부터 개시되는 사업연도에도 동일하게 19%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함[8]
- 본 재정법에는 위의 2020년 3월의 논의가 법률로 반영된 것임

■ **소득세법과 관련하여, 파견 근로자의 세법상 지위 관련 사항을 변경하고 Loan Charge 과세방안을 개정함[9]**

○ 파견 근로자의 세법상 지위를 변경함

- 모든 공공부문과 대규모 또는 중간 규모의 민간부문 고용관계에서,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 관련 지위를 정할 의무가 있음
- 위 의무 이행의 결과로서 공공부문 또는 대규모·중간 규모 민간부문에 용역을 공급하는 파견직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고용 지위를 확정받게 됨
  · 이때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결정한 고용 지위를 거부할 권리도 함께 부여됨

4) News IBFD, "United Kingdom - United Kingdom Enacts Finance Act 2020", Aug 6, 2020, https://research.ibfd.org/#/doc?url=/data/tns/docs/html/tns_2020-08-06_uk_1 (accessed Sep 1, 2020)
5) https://www.legislation.gov.uk/ukpga/2020/14/contents/enacted, 검색일자: 2020. 9. 1.
6) News IBFD, "United Kingdom - Finance Act 2020: United Kingdom Introduces a New Digital Services Tax and Maintains the Corporation Tax Rate at 19% for 2020-2021", Aug 21, 2020, https://research.ibfd.org/#/doc?url=/document/tns_2020-08-21_uk_1 (accessed Sep 1, 2020)
7) HMRC, 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publications/corporation-tax-to-17-in-2020, 검색일자: 2020. 9. 4.
8) HMRC, 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publications/changes-to-corporation-tax-rates-from-1-april-2020, 검색일자: 2020. 9. 4.
9) News IBFD, "United Kingdom - United Kingdom Introduces Income Tax Changes as Part of Finance Act 2020", Aug 14, 2020, https://research.ibfd.org/#/doc?url=/document/tns_2020-08-14_uk_1 (accessed Sep 1, 2020)

○ Disguised remuneration[10] 형식의 위장 거래 관련 과세 방침(Loan Charge)[11]을 개정함

- 2010년 12월 9일 이전에 이루어진 대출거래에는 Loan Charge를 적용하지 않음
- 2016년 4월 6일 이전에 이루어진 고액 대출거래가 HMRC에 신고되었고 HRMC가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경우 Loan Charge를 적용하지 않음
- HMRC는 위 개정으로 인하여 Loan Charge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대출거래에서 이루어진 자발적 납부액을 환급할 예정임

■ **디지털서비스세를 시행함[12], [13]**

○ 2020년 4월 1일부터 영국 유저를 통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서비스 매출액의 2%를 과세함

○ 디지털서비스 관련 활동으로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(SNS), 검색엔진, 온라인 마켓 플랫폼 등이 있음

○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연도에 그룹 내 총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5억파운드[14] 이상이고, 동시에 영국 관련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,500만파운드[15] 이상인 다국적기업임

- 영국 관련 디지털 서비스 매출 계산 시 최초 2,500만파운드는 계산에서 제

10) Disguised remuneration은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세회피전략임. 일반적으로는 제3자(주로 신탁)로부터의 대출이나 금전차입 등의 거래를 중간에 개입시키고, 채권자가 그 대출금 또는 차입금을 다시 회수하지 않는 일종의 영구 대여의 형태로 이루어짐. 주로 근로자나 개인 간 소득 지급 시 월급의 일정 부분을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용됨, 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collections/tax-avoidance-disguised-remuneration, 검색일자: 2020. 9. 1.

11) Loan Charge는 위 Disguised remuneration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과세방침으로서, (i)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 기간 이상 위 조세회피전략으로 추정되는 대출계약이 존속하고 (ii) 총 상환금이 잔여대출금 미만인 경우 이를 'outstanding' 거래로 분류하여, 잔여 대출금만큼을 채무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부과함, https://www.gov.uk/guidance/report-and-account-for-your-disguised-remuneration-loan-charge#the-loan-charge, 검색일자: 2020. 9. 4.

12) News IBFD, "United Kingdom - Finance Act 2020: United Kingdom Introduces a New Digital Services Tax and Maintains the Corporation Tax Rate at 19% for 2020-2021", Aug 21, 2020, https://research.ibfd.org/#/doc?url=/document/tns_2020-08-21_uk_1 (accessed Sep 1, 2020)

13) 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publications/introduction-of-the-digital-services-tax/digital-services-tax. 검색일자: 2020. 9. 1.

14) 2020. 9. 1.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,936억원임

15) 2020. 9. 1.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6억원임

외함

■ **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(이하 'GAAR')의 절차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함**[16]

○ 본 개정은 고의로 HMRC의 GAAR 관련 정보제공 요청 또는 질의를 회피하는 일부 납세자들에 대응하기 위함임

○ HMRC가 통상적인 조사기간(12개월)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통지 절차를 마련함

○ 납세자들은 GAAR 적용에 따른 조정 내용에 불복할 수 있고 독립된 자문위원회(advisory panel)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

<자료 수집 및 정리: 김도연 변호사>

16) News IBFD, "United Kingdom - Finance Act 2020: United Kingdom Introduces Changes to HMRC's Priority on Insolvency,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f Directors, Taxation of Coronavirus Support Payments and GAAR". Aug 26, 2020, https://research.ibfd.org/#/doc?url=/document/tns_2020-08-26_uk_2 (accessed Sep 1, 2020)